

예산총칙

제1조 : 201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계	510,929,492	15,327,885
1. 일반회계	500,027,238	15,000,817
2. 특별회계	10,902,254	327,068
의료급여기금	1,213,234	36,397
주차장	8,207,697	246,231
주거환경개선사업	404,797	12,144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334,228	10,027
지하수관리	742,298	22,269

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3조 :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,600,000천원이다.

제4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4,380,044천원으로 한다.

재해·재난 목적 예비비는 3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5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 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비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6조 : 금회 추경 후에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추가로 내시되는 국·시비보조금 (구비부담금 포함), 지방교부세, 특별교부금, 조정교부금, 재정보전금 등은 예산승인(명시이월 등 포함)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,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